



제 418회 국회 (정기회)
제12차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조경분야 실측설계 수행 자격 정비 〉

■ 박정하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4661호)

2024. 11.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원모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3
1. 조경분야 실측설계 수행 자격 정비	3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박정하의원 등 11인

나. 발 의 일: 2024. 10. 11.

다. 회 부 일: 2024. 10. 14.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유산수리 및 실측설계 제한 규정을 두고 문화재 실측설계를 할 수 있는 자의 자격을 제한함으로써 국가유산수리업(자)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품질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유산 실측설계를 할 수 있는 자는 국가유산실측설계업자이고 같은 법 시행령에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중 실측설계기술자로서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 자격을 가진 자로 제한하여 전통조경 설계분야에서 건축전문의 실측설계기술자가 수급받도록 규정함으로써 조경기술자의 조경분야 설계 참여나 진입을 제한하고 있음.

이러한 조경 이외의 기술자에 의한 조경설계는 조경기술자의 설계 참여 기회를 감소시키고 임시계약 형식으로 참여함에 따라 시공분야에도 영향을 미쳐 비전문 공사업체가 수급받는 구조로 이어져 국가유산 수리 품질 저하와 전문인력 양성을 저해함으로써 국가유산 수리의 전문성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당초 법 취지를 훼손함.

이에 국가유산수리도 각 분야 전문가의 책임 하에 이루어지고 전통
조경설계는 건축전문의 실측설계업자가 아닌 조경전문가가 직접 수급
받아 수행할 수 있도록 실측설계기술자·기능자 및 수리업에 ‘조경설
계’ 분야를 추가함으로써 국가유산수리업의 전문성 향상과 건전한 발
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6항 및 제8조제1항 후단 삭제, 제9
조·제15조·제49조).

Ⅲ. 검토의견

1. 조경분야 실측설계 수행 자격 정비(안 제5조제6항 등)

가. 개정안의 요지

개정안은 국가유산수리의 조경분야 실측설계 업무를 담당하는 조경 설계기술자 자격을 신설하여 조경전문가가 직접 조경설계를 수급받아 국가유산수리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전통조경을 보존하고 국가유산 수리의 전문성을 향상시키려는 것임(안 51조제1항).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5조(국가유산수리 및 실측설계 제한) ① ~ ⑤ (생략) ⑥ <u>국가유산실측설계업자가 조경 분야의 실측설계를 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경계획과 시공 업무를 담당하는 국가유산수리기술자에게 하도록 하여야 한다.</u>	제5조(국가유산수리 및 실측설계 제한) ① ~ ⑤ (현행과 같음) <u><삭제></u>
제8조(국가유산수리기술자) ① 국가유산수리기술자가 되려는 자는 국가유산청장이 시행하는 기술 종류별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u>이 경우 국가유산수리를 위한 실측설계 도서의 작성 업무</u>	제8조(국가유산수리기술자) ① ----- ----- ----- ----- ----- <u>. <후단 삭제></u>

를 담당하는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자는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자격을 가진 자이어야 한다.

② ~ ⑥ (생략)

제9조(국가유산수리기술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국가유산수리기술자가 될 수 없다.

1. 2. (생략)

3. 「건축사법」(실측설계 도서의 작성업무를 하는 자만 해당한다) 또는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그 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5. (생략)

제15조(국가유산수리업자등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국가유산수리업자등이 될 수 없다.

1. 2. (생략)

3. 「건축사법」(국가유산실측설계업자만 해당한다) 또는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그 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9조(국가유산수리기술자의 결격사유) -----

-----.

1. 2. (현행과 같음)

3. 「건축사법」 및 「기술사법」 --

4. 5. (현행과 같음)

제15조(국가유산수리업자등의 결격사유) -----

-----.

1. 2. (현행과 같음)

3. 「건축사법」 및 「기술사법」(국가유산실측설계업자만 해당한다)

4. 5. (생략)	4. 5. (현행과 같음)
6. 「건축사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건축사업무신고등의 효력상실처분을 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건축사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건축사업무신고등의 효력상실 또는 「기술사법」 제12조에 따라 조경기술사사무소의 등록취소 -----
7. 8. (생략)	7. 8. (현행과 같음)
제49조(국가유산수리업자등의 등록취소 등) ① (생략)	제49조(국가유산수리업자등의 등록취소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유산실측설계업자가 「건축사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건축사업무신고등의 효력상실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처분일부터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건축사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업무정지기간 동안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 「건축사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건축사업무신고등의 효력상실처분을 받은 경우 또는 「기술사법」 제12조에 따라 조경기술사사무소의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 ----- -----.
③ ④ (생략)	③ ④ (현행과 같음)

나. 검토의견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은 전통조경을 우리나라 고유의 역사·문화·사상 등을 담아 수목을 식재하거나 건축물을 배치하는 등 전통적인 기법으로 외부공간을 조성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조경진흥법」은 조경을 토지나 시설물을 대상으로 인문적, 과학적

지식을 응용하여 경관을 생태적, 기능적, 심미적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계획·설계·시공·관리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음¹⁾.

전통조경은 궁궐, 왕릉, 서원·향교, 민가, 사찰, 별서, 누·정·대 등을 대상으로 경관이 빼어난 자연환경에 최소한의 인공을 가미하여 자연 지형에 순응한 공간을 구성하고, 차경²⁾을 활용하여 정원을 조성하는 특징이 있고, 현대조경은 자연공원, 도시공원, 수목원, 국가정원 등을 대상으로 이용목적·경관연출을 위해 지형을 조작하거나 합목적성에 따른 동선을 구획하는 등의 특징을 가지고 있어 전통조경과 현대조경은 대상과 공간연출 등에서 구별되는 점이 있음.

현행법은 국가유산수리의 전문성과 품질 향상을 위해 국가유산수리의 실측설계를 국가유산실측설계업자(실측설계기술자)가 하도록 제한하고 있고³⁾, 실측설계기술자가 되려는 사람은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
- 1)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9. “전통조경”이란 우리나라 고유의 역사·문화·사상 등을 담아 수목을 식재하거나 건축물을 배치하는 등 전통적인 기법으로 외부공간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조경진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조경”이란 토지나 시설물을 대상으로 인문적, 과학적 지식을 응용하여 경관을 생태적, 기능적, 심미적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계획·설계·시공·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 2) 자연경관을 건축 속으로 끌어들여 마치 외부의 경관이 건축의 일부인 것처럼 활용하는 건축기법
- 3)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실측설계”란 국가유산수리 또는 기록의 보존을 위하여 제1호 각 목의 것을 실측(實測)하거나 고증(考證) 조사 등을 통하여 실측도서나 설계도서 등을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
7. “국가유산실측설계업”이란 이 법에 따른 실측설계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8. “국가유산실측설계업자”란 제14조에 따라 국가유산실측설계업의 등록을 하고 국가유산실측설계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제5조(국가유산수리 및 실측설계 제한) ⑤ 국가유산수리의 실측설계를 하려는 경우에는 국가유산실측설계업자에게 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동산문화유산 분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국가유산수리의 실측설계나 식물보호 분야 및 국가유산청장이 직접 수행하는 보존처리를 위한 실측설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국가유산실측설계업자가 조경 분야의 실측설계를 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경계획과 시공 업무를 담당하는 국가유산수리기술자에게 하도록 하여야 한다.

자격을 가진 자가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음⁴⁾.

동법 시행령(별표2)에서는 국가유산수리기술자의 종류를 보수기술자, 단청기술자, 실측설계기술자, 조경기술자, 보존과학기술자 및 식물보호기술자로 구분하고 있는데, 실측설계기술자의 업무 범위에는 실측설계를 포함하고 있는 반면에 조경기술자 등의 업무 범위에는 실측설계를 포함하지 않고 있음.

[국가유산수리기술자의 종류 및 그 업무범위]

종류	업무 범위
보수기술자	가. 건축·토목공사의 시공 및 감리 나. 가목과 관련된 고증·유구(遺構: 옛 구조물의 흔적) 조사 및 수리(修理)보고서의 작성과 그에 따른 업무
단청기술자	가. 단청분야[불화(佛畵)를 포함한다]의 시공 및 감리 나. 가목과 관련된 고증·유구조사 및 수리보고서의 작성과 그에 따른 업무
실측설계기술자	가. 국가유산수리의 실측설계 문서의 작성 및 감리 나. 가목과 관련된 고증·유구조사와 그에 따른 업무
조경기술자	가. 조경공사의 조경계획과 시공 및 감리 * <u>조경실측 업무 없음</u> 나. 가목과 관련된 고증·유구조사 및 수리보고서의 작성과 그에 따른 업무
보존과학기술자	가. 보존처리(동산문화유산은 제외한다) 시공 및 감리 나. 동산문화유산 보존처리계획의 수립 및 보존처리의 수행 다. 가목 및 나무와 관련된 고증·유구조사 및 수리보고서의 작성과 그에 따른 업무
식물보호기술자	가. 식물의 보존·보호를 위한 병충해 방제, 수술, 토양개량, 보호 시설 설치, 환경개선 및 감리 나. 가목과 관련된 진단, 수리보고서의 작성과 그에 따른 업무

4)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국가유산수리기술자) ① 국가유산수리기술자가 되려는 사람은 국가유산청장이 시행하는 기술 종류별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유산수리를 위한 실측설계 문서의 작성 업무를 담당하는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자격 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

다만, 동법 제5조제5항은 동산문화유산 분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국가유산수리의 실측설계나 식물보호 분야 및 국가유산청장이 직접 수행하는 보존처리를 위한 실측설계는 실측설계기술자가 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음.

동법 제6조6항에서는 실측설계업자가 조경 분야의 실측설계 시 국가유산수리의 전체 실측설계 중 조경 분야의 실측설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20 이상인 경우 또는 실측설계 예정금액이 5백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조경계획과 시공 업무를 담당하는 국가유산수리기술자인 조경기술자에게 하도록 하고 있는데⁵⁾, 이는 전통조경의 전문성과 전통기법 보존을 도모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그런데, 조경 분야의 실측설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20 이상인 경우 또는 국가유산수리의 전체 실측설계 중 조경 분야의 실측설계 예정금액이 5백만원 이상인 경우 국가유산실측설계업자가 조경기술자 개인에게 위탁하여 실측설계를 실시하는데, 이 경우 실측설계업자가 조경기술자에게 설계비의 상당분을 차감하여 경비를 지급하여 조경전문가의 의욕 상실과 이로 인한 설계품질이 저하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고,

조경 분야의 실측설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20 미만인 경우

5)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국가유산수리의 실측설계 제한) ② 법 제5조 제6항에 따라 국가유산실측설계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실측설계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표 2 제4호에 따른 조경기술자에게 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국가유산수리의 전체 실측설계 중 조경 분야의 실측설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20 이상인 경우
2. 국가유산수리의 전체 실측설계 중 조경 분야의 실측설계 예정금액이 5백만원 이상인 경우

또는 국가유산수리의 전체 실측설계 중 조경 분야의 실측설계 예정 금액이 5백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조경분야 비전문가인 국가유산실측 설계업자가 직접 설계를 실시하고 있어 설계품질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으로, 우리나라 전통조경의 정체성 확립과 전통조경 문화 계승 발전에 저해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개정안은 국가유산실측설계업자가 도급받아 조경기술자에게 하도급을 줄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자격조항을 삭제하고, 국가유산수리업에 조경 설계 분야를 별도 신설하여 조경전문가가 직접 용역을 낙찰받고 전통 조경을 실측설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전통조경 분야에 대한 국가유산 수리의 전문성 확보, 품질 향상 도모 및 이 분야 용역의 하도급 양산 문제 해결 등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타당한 입법조치로 봄.

한국기술사회, 국가유산조경기술자회 및 한국조경학회 등은 한국 전통조경 분야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건축사법과 마찬가지로 기술사법에 의해 기술사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규정하고 있다는 입장임.

다만, 국토교통부는 국가유산수리시 건축물·토목·조경 등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현행 법령에서 일정규모 이상의 조경분야 실측설계를 하려는 경우 조경기술자를 통하도록 하여 조경설계의 특수성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현행제도 유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고,

대한건축사협회는 실측설계기술자를 건축사 자격을 가진 자로 응시 자격을 한정 한 것은 전문성 확보, 수리 일관성 및 완성도를 위함으로, 응시자격 조건 완화시 전문성 확보 곤란, 종합적인 설계 및 관리 불가, 업무 부실 책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임.

문 의 처

02)6788-5384

참고 1

전통조경과 현대조경

구분	전통조경	현대조경
정의	[자연유산법] 우리나라 고유의 역사·문화·사상 등을 담아 수목을 식재하거나 건축물을 배치하는 등 <u>전통적인 기법으로 외부공간을 조성하는 것</u>	[조경진흥법] 토지나 시설물을 대상으로 <u>인문적, 과학적 지식을 응용하여 경관을 생태적·기능적·심미적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계획·설계·시공·관리하는 것</u>
관계 법령	(국가유산청) 자연유산법	(국토교통부) 조경진흥법, 도시공원녹지법 (환경부) 자연공원법 (산림청) 수목원·정원법
대상	궁궐조경, 왕릉조경, 서원·향교조경, 민가조경, 사찰조경, 별서조경, 누·정·대 등	자연공원, 도시공원, 수목원, 국가정원 등
입지	경관이 빼어난 자연환경에 최소한의 인공을 가미한 정원 조성 	이용목적·경관연출을 위한 지형조작 
공간 연출	자연지형에 순응한 공간구성, 동선 구획, 조망점 주변 자연 활용(차경) 	합목적성에 따른 동선 구획, 서양식 공원·정원의 심미 경관연출 차용 
보존 관리	고문헌·서화·지리지 등 원형고증에 입각한 복원, 유지관리	[세종 호수공원] 하자보수, 경상관리 등 시설 조성 이후 유지관리

※ 자료: 국가유산청

참고 2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자격시험 과목 및 업무범위

○ 실측설계 관련 규정(「국가유산수리법」 [시행 2024.5.17.])

조항	내용
국가유산수리법 제8조	국가유산수리기술자가 되려는 사람은 국가유산청장이 시행하는 기술 종류별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유산수리를 위한 실측설계 도서의 작성 업무를 담당하는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

○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종류별 자격시험의 필기과목 및 시험방법(수리법 시행령 별표4)

종류	공통과목	전공과목	
	선택형	선택형	논술형
보수기술자	국가유산관계법령, 한국사	한국건축사	한국건축구조, 한국건축보수실무
단청기술자	국가유산관계법령, 한국사	한국건축사	단청개론, 단청보수실무
실측설계기술자	국가유산관계법령, 한국사	한국건축사	한국건축실측, 한국건축설계제도실무
조경기술자	국가유산관계법령, 한국사	조경사	전통조경, 전통조경설계 및 시공실무
보존과학기술자	국가유산관계법령, 한국사	화학	보존과학개론, 국가유산보존실무
식물보호기술자	국가유산관계법령, 한국사	토양학	수목생리, 식물보호실무

○ 국가유산수리기술자의 종류 및 그 업무범위(수리법 시행령 별표2)

종류	업무 범위
보수기술자	가. 건축·토목공사의 시공 및 감리 나. 가목과 관련된 고증·유구(遺構: 옛 구조물의 흔적) 조사 및 수리(修理)보고서의 작성과 그에 따른 업무
단청기술자	가. 단청분야[불화(佛畵)를 포함한다]의 시공 및 감리 나. 가목과 관련된 고증·유구조사 및 수리보고서의 작성과 그에 따른 업무
실측설계기술자	가. 국가유산수리의 실측설계 도서의 작성 및 감리 나. 가목과 관련된 고증·유구조사와 그에 따른 업무
조경기술자	가. 조경공사의 조경계획과 시공 및 감리 * 조경실측 업무 없음 나. 가목과 관련된 고증·유구조사 및 수리보고서의 작성과 그에 따른 업무
보존과학기술자	가. 보존처리(동산문화유산은 제외한다) 시공 및 감리 나. 동산문화유산 보존처리계획의 수립 및 보존처리의 수행 다. 가목 및 나목과 관련된 고증·유구조사 및 수리보고서의 작성과 그에 따른 업무
식물보호기술자	가. 식물의 보존·보호를 위한 병충해 방제, 수술, 토양개량, 보호시설 설치, 환경개선 및 감리 나. 가목과 관련된 진단, 수리보고서의 작성과 그에 따른 업무

※ 자료: 국가유산청

참고 3

관련 세미나 · 공청회

세미나명 (개최일자)	의견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조경분야 발전 토론회 (‘21.03.23.)	○ 실측설계 조경분야를 예외항목으로 분리 ○ 실측설계의 비율에 대한 모호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구분 필요 (실측설계예정금액 → 실측설계비용) ○ 실측설계에 조경분야 분리신설을 통한 전통조경에 대한 전문성 확보 및 품질 향상 필요
전통조경 보존관리활용 5개년기본계획 1차 공청회 (‘21.10.22.)	○ 전통조경은 한국적 정체성을 띤 전통경관으로 거듭나 자연유산 정책을 이끌어야 함 ○ 실측설계업무부터 보수분야와 조경분야를 분리하여 하도급, 임시 고용이 아니라 원도급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 필요
전통조경 보존관리활용 5개년기본계획 2차 공청회 (‘21.11.17)	○ 조경기술자가 조경설계를 수주하지 못하는 제도의 한계, 업무범위에 대한 오인, 담당공무원의 전문성 결여, 하도급이나 임시고용으로 참여하는 한계 ○ 2011년 수리법 제정 이후 조경업이 종합업이 되지 못하여 문제점 노출, 조경시공 분리발주 방안 제시
전통조경 보존관리활용 5개년기본계획 3차 공청회 (‘21.12.06)	○ 1·2차 공청회에 제시된 제도개선 과제 추진 ○ 건축물 위주의 전통공간 구축에 전통사상이 담긴 정체성이 사라지는 현실을 개선해나갈 필요 ○ 조경유산 발굴, 조경설계와 시공관련 법제도 개선, 수리설계도서 작성기준 등 정책기반 마련 추진
자연유산법 제정과 전통조경의 미래 토론회 (‘23.11.03.)	○ 자연유산법을 통해 전통조경의 정체성 확립과 보급, 육성해야(표준설계보급, 세계화사업, 설계분리) ○ 전통정원·명승의 보존활용 활성화와 디지털보급, 한국 정원의 세계적 홍보위한 노력 필요

※ 자료: 국가유산청